

위원회설치 규정

□ 제정 : 1997. 3. 1

□ 개정 : 2008. 3. 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에 설치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은 정관 및 학칙에 의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위원회에 적용된다.

② 각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이 규정의 범위내에서 소관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나, 위원회의 자체규정을 특별하게 제정할 필요가 없는 위원회의 설치·운영은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설치) ① 총장은 학교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문기관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기획실의 협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득해야 한다.

③ 위원회 설치를 위해 총장의 재가를 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사유, 목적, 기능, 구성, 운영사항 등을 기재한 규정(안)을 작성하여 기획실을 경유해야 한다.

제4조(구성) ① 각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및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제5조(소집과 의결) ① 각 위원회는 총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되, 필요에 따라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7조(간사) ① 각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② 간사는 교원 또는 사무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